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6. 1.(화) 10: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3인)
4. 불참위원 : 이경자 부위원장 (1인)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씨제이미디어 등 6개사 - (2010-32-121~128)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제1항 및 제3항과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지연한 (주)씨제이미디어 등 6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행정처분 내용 >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처분내용
(주)씨제이미디어	변경등록 지연 (법인 합병)	3천만원	과징금
(주)엠넷미디어	변경신고 지연 (편성책임자 변경)	2백5십만원	과태료
	변경신고 지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2백5십만원	과태료
케이엠티브이(주)	변경신고 지연 (편성책임자 변경)	2백5십만원	과태료
	변경신고 지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2백5십만원	과태료
(주)씨제이시스템즈	변경신고 지연 (최다액출자자 변경)	2백5십만원	과태료
(주)씨에스충북방송		2백5십만원	과태료
(주)알앤엘바이오		2백5십만원	과태료

2) 보조적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에 관한 건 - (2010-32-078)

- 최재유 융합정책관의 보고를 받고, 규제개선을 통해 TV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조적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개선안 주요내용

①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허용

- 비홈쇼핑 방송사업자에게도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이용한 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허용

※ 다만, 상업적 광고를 하지 않는 KBS-1TV, 공공채널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및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TV 전자상거래 제한

- ② 데이터방송의 통신망과의 연계 허용
- ③ 데이터방송 광고의 화면크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여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고, 1차 화면 이후에서는 전체화면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음
- ④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청자 보호방안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

**사. 보고사항**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아날로그TV 종료일’ 및 ‘저소득층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①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관련 사항

-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 2012년 12월 31일(월) 오전 4시
- 시범사업 지역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및 대상 방송국

시범지역 구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종료일시	2010. 9. 1. 14시	2010. 10. 6. 14시	2010. 11. 3. 14시	2011. 6. 29. 14시
종료대상 방송(보조)국명	KBS현종산제2TV 방송보조국 등 7개	KBS군동제2TV방송 보조국 등 7개	KBS금수산제2TV 방송보조국 등 10개	KBS제주제2TV 방송국 등 11개

※ 시범사업 지역의 방송(보조)국 중 KBS-1TV는 미전환자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기 종료일로부터 30일 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②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생계를 지원하는 대상이므로, 유료방송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전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전체(85.4만가구)로 하고, DTV 구매보조를 선택적으로 지원
- 수급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나은 차상위 계층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직접수신가구(47.5만가구)에 대해 지원

##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10. 3. 22.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시행('10. 9. 23.)을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 ① 도매제공(재판매) 제도 도입 준비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현행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마련토록 함

※ 강화된 내용 : ①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② 24시간 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 당 1명 이상의 민원 처리 직원 확보

③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운영

### ② 시설관리기관 제도 도입 준비

- 도로공사, 한전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규정된 시설관리기관 외에, 방통위가 고시하는 설비규모 또는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설비제공 의무 시설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③ 기타 개정사항

- 법개정으로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도매제공 대가 등을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및 이동통신사의 콘텐츠사업자(CP : Contents Provider)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세부기준을 마련
- 회계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매출액의 2/100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보편적 의무 손실 보전금'을 분담하도록 함
  - ※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만 분담
- 별정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 통화권 발행총액의 50%를 최저 가입금액으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아. 기 타

###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10. 6. 7.(월) 10:00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30)